

#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의안 번호	6764
----------	------

제출연월일 : 2023. 9. .

제안자 : 대구광역시장

## □ 제안이유

-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

##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 상정안건 : 4건

- 대구정책연구원 출연 계획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안건 1 대구정책연구원 출연 계획안

## 1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 화
		김 진 혁	주 준 호	이 기 영	803-6571

<b>출연대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재단법인 대구정책연구원</li> <li>○ 대표 : 박 양 호</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신천동)</li> <li>• 인력 : 정원 50명 / 현원 36명</li> <li>• 주요사업 : 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주요정책 연구 및 타당성 검토, 연구기관과 교류협력, 대구경북 공동발전 연구 등</li> </ul> </li> </ul>																																																		
<b>출연금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 예정금액 : 4,300백만원(시비)</li> <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3년 출연액</th> <th rowspan="2">2024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4,300</td> <td>4,300</td> <td>4,300</td> <td></td> <td>4,300</td> <td></td> <td></td> </tr> <tr> <td>인건비</td> <td>1년</td> <td>3,470</td> <td>3,580</td> <td>3,580</td> <td></td> <td>3,580</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업비</td> <td>1년</td> <td>630</td> <td>600</td> <td>600</td> <td></td> <td>600</td> <td></td> <td></td> </tr> <tr> <td>경상경비</td> <td>1년</td> <td>200</td> <td>120</td> <td>120</td> <td></td> <td>12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출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4,300	4,300	4,300		4,300			인건비	1년	3,470	3,580	3,580		3,580			연구사업비	1년	630	600	600		600			경상경비	1년	200	120	120		120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출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4,300	4,300	4,300		4,300																																													
인건비	1년	3,470	3,580	3,580		3,580																																													
연구사업비	1년	630	600	600		600																																													
경상경비	1년	200	120	120		120																																													
<b>출연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미래 50년 핵심 정책과제 발굴과 연구, 주요정책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는 우리시 정책싱크탱크인 대구정책연구원에 대한 지원 필요</li> </ul>																																																		
<b>근거법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li> <li>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li> <li>○ 「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재원)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li> <li>② 시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li> </ul>																																																		
<b>지도감독 부서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우리시 정책과제 연구와 수행을 위한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경비 예산로 편성되어 있음</li> <li>○ 주요사업은 대구미래 50년 정책구상,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대구정책브리프 발간, 연구간행물 발간, 유관기업 협력네트 구축 등 추진</li> </ul>																																																		



## 1-2 출연 기관현황

[단위 : 백만원]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과운영에관한법률」 제4조</li> <li>「대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li> </ul>			전화번호 : 053-770-0500	홈페이지 : www.dpi.re.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 12월 대구정책연구원 조례 제정</li> <li>2023. 1월 행정안전부 설립 허가</li> <li>2023. 2월 대구정책연구원 개원</li> </ul>		기관형태	대구광역시 출연			
인원현황 (’23. 9월 기준)	계 44명		정규직 36명	비정규직 8명			
임원 (’23. 9월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당연직)	홍준표	현)대구광역시장	당해직위 재임기간			
	이사(당연직)	박양호	현)대구정책연구원장	’23.02.01. ~ ’26.01.31.			
	이사(선임직)	국양	현)DGIST 총장	’23.02.01. ~ ’26.01.31.			
	이사(선임직)	신일희	현)계명대학교 총장	’23.02.01. ~ ’26.01.31.			
	이사(선임직)	홍원화	현)경북대학교 총장	’23.02.01. ~ ’26.01.31.			
	비상임감사	이석화	현)변호사	’23.02.01. ~ ’26.01.31.			
	비상임감사	배종호	현)공인회계사	’23.02.01. ~ ’26.01.31.			
주요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주요 정책의 연구·조사</li> <li>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li> <li>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출판·배포</li> <li>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li> <li>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해외자료와의 비교·연구</li> <li>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li> <li>시와 경상북도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li> <li>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련 사업과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8,470 (2023년 기준)		출연액 (단위:백만원)		4,300 (2023년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연도	2023	-	-	재무현황 '22. 12. 31.기준	자산	-
	예산액 <sup>2)</sup>	6,249	-	-		부채	-
	지자체 지원액 <sup>3)</sup>	4,300	-	-		자본 <sup>1)</sup>	-
경영성과 '22.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		-		-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1-⑥ 출연기관 사업계획서

사업명	대구정책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4,300백만원(시비)

### □ 목적 및 필요성

- 市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출연개요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구광역시 대구정책연구원 육성 조례」 제6조
- 출연금액 : 4,300백만원
- 지원범위 : 자체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 주요사업 : 정책과제 수행, 용역과제 수행, 연구간행물 발간, 대외 교류협력 사업 등

### □ 산출기초

- 출연액 : 4,300백만원
  - 인건비 : 3,580백만원
  - 연구사업비 : 600백만원
    - 전략과제 및 정책과제수행, 전략랩 및 전문연구센터 운영 등
    - 연구사업, 연구간행물 발간, 유관기관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신규사업 : 대형프로젝트형 기획연구 추진, 신규 전문분야 연구조직 운영 등
  - 경상경비 등 : 120백만원

### 【 5년간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예정)
출연금	4,300	4,300	4,300	4,300	4,300	4,300

※ 2019년~2022년 : 대구경북연구원, 2023년 : 대구정책연구원

□ **기대효과**

- 지역현안에 대한 실현가능한 해결방안 모색 및 정책개발로 지역경쟁력 강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선제적 정책대응 미비로 도시 경쟁력 약화

## 안건 2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 2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 화
		김진혁	이정하	김세한	803-2553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재단법인)</li> <li>○ 대표 : 김일재</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li> <li>• 인력 : 정원 115명 / 현원 106명(정규직 95, 공무원 11)</li> <li>• 주요기능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조사·연구, 지방자치행정 당면과제 조사 연구, 사업(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등</li> </ul> </li> </ul>																																																		
출연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 예정금액 : 250백만원(시비)</li> <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3년 예산액</th> <th rowspan="2">2024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250</td> <td>250</td> <td>250</td> <td></td> <td>250</td> <td></td> <td></td> </tr> <tr> <td>인건비</td> <td>1년</td> <td>189</td> <td>189</td> <td>189</td> <td></td> <td>189</td> <td></td> <td></td> </tr> <tr> <td>경상비</td> <td>1년</td> <td>21</td> <td>21</td> <td>21</td> <td></td> <td>21</td> <td></td> <td></td> </tr> <tr> <td>연구사업비</td> <td>1년</td> <td>40</td> <td>40</td> <td>40</td> <td></td> <td>4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250	250	250		250			인건비	1년	189	189	189		189			경상비	1년	21	21	21		21			연구사업비	1년	40	40	40		40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250	250	250		250																																													
인건비	1년	189	189	189		189																																													
경상비	1년	21	21	21		21																																													
연구사업비	1년	40	40	40		40																																													
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국가와 17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운영</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li> </ul>																																																		
지도감독 부서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도 우리 시 출연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연구과제 수행비,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로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li> </ul>																																																		



## 2-2 출연기관 현황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전화번호 : 033-769-9824				
				홈페이지 : www.krila.re.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84. 9월 지방행정연구소 개소</li> <li>1986.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칭</li> <li>1986. 5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정</li> <li>2002~2006 UNESCAPE LOGOTRI 회장기관</li> <li>2002, 2004 경영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li> <li>2014. 11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li> <li>2016. 12월 청사이전(서울 → 원주)</li> </ul>		기관형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				
인원현황 (’23. 9월 기준)	계		정규직	공무직				
	106명		95명(원장 포함)	11명				
임원 (’23. 9월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원장	김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li> <li>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li> <li>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li> </ul>	3년 (2020.12.17.~ 2023.12.16.)				
	당연직이사 (비상임)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안부(3)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자치분권국장, 지방재정국장, 균형발전지원국장(공석)</li> <li>광역 시·도(16) : 기획관리(조정)실장</li> <li>※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공석</li> </ul>	당해직위 재임기간				
	임의직이사 (비상임)	4명	· 학계 4인	-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li> <li>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평가 및 연구</li> <li>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li> <li>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수탁</li> <li>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사업 등</li> </ul>							
[단위 : 백만원]								
자본금 <sup>1)</sup>		57,229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직전연도말 기준)	4,150		
최근3년간 예산현황	일반회계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22. 12. 31. 기준)	자산	65,443
		예산액 <sup>2)</sup>	11,243	12,961	13,352		부채	8,218
	지자체 지원액 <sup>3)</sup>	4,150	4,150	4,150	자본 <sup>1)</sup>			
	특별회계	예산액 <sup>2)</sup>	10,865	9,160			9,375	
	지자체 지원액 <sup>3)</sup>	-	-	-				
경영성과 (’22.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9,132			19,246		(114)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2-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50백만원(시비)

### □ 목적 및 필요성

- 중앙과 지방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 연구과제 수행
- 지방시대의 실현과 제도적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 개발 및 제시
-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과 연구기능 정상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 지방투자사업(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타당성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하는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지원

### □ 출연개요

- 출연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 산정방식 : 17개 시·도 균등 분담 ※ 16개 시·도 250백만원, 세종특별시 150백만원
- 출연금액 : 250백만원

□ 산출기초

○ 2024년도 대구시 출연금 : 2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 내역
합 계		250 (100.0%)	
인건비 소계		189 (75.6%)	연구원 인건비 총액(71억원)의 2.7%
인건비(연봉)		189	
연구사업비 소계		40 (16%)	연구원 사업비 총액(23억원)의 1.7%
연구 사업비	정책연구과제	10	자치단체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
	정책이슈리포트	8	자치단체 현안과제 개발사업 등
	학술행사 등	12	국내외 세미나, 지방의정아카데미, 자치분권과사회혁신 포럼, 지방자치단체컨설팅 지원 등
	발간사업 등	10	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등
일반운영비 소계		21.0 (8.4%)	연구원 운영비 총액(12억원)의 1.8%
일반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보험료 시설 및 청사관리비 등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연금	2,050	100	200	150	200	200	200	250	250	250	250

□ 기대효과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정책지원 등 지역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대안 개발

○ 지방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 체계구축 등 지방정책에 대한 국가 정책 반영 제시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출연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에 필요한 양질의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에 대한 어려움 발생

### 안건 3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 3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 화																																																											
		김옥흔	박주환	박가영	803-2482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 : 지방공기업평가원</li> <li>○ 대표 : 목영만</li> <li>○ 일반현황 (소재지) 서울 서초구, (정원/현원) 65명/58명 (주요기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훈련 등</li> </ul>																																																															
출연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출연 예정금액 : 54백만원(시비)</li> <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3년 예산액</th> <th rowspan="2">2024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60.0</td> <td>54.0</td> <td></td> <td></td> <td>54.0</td> <td></td> <td></td> </tr> <tr> <td>인건비 등</td> <td>1년</td> <td>30.0</td> <td>24.0</td> <td></td> <td></td> <td>24.0</td> <td></td> <td></td> </tr> <tr> <td>주요 사업비</td> <td>1년</td> <td>30.0</td> <td>30.0</td> <td></td> <td></td> <td>30.0</td> <td></td> <td></td> </tr> <tr> <td>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td> <td>1년</td> <td>24.0</td> <td>24.0</td> <td></td> <td></td> <td>24.0</td> <td></td> <td></td> </tr> <tr> <td>지방공기업발전 지원사업 등</td> <td>1년</td> <td>6.0</td> <td>6.0</td> <td></td> <td></td> <td>6.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60.0	54.0			54.0			인건비 등	1년	30.0	24.0			24.0			주요 사업비	1년	30.0	30.0			30.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1년	24.0	24.0			24.0			지방공기업발전 지원사업 등	1년	6.0	6.0			6.0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60.0	54.0			54.0																																																										
인건비 등	1년	30.0	24.0			24.0																																																										
주요 사업비	1년	30.0	30.0			30.0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1년	24.0	24.0			24.0																																																										
지방공기업발전 지원사업 등	1년	6.0	6.0			6.0																																																										
출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원화, 정책연구 강화, 임직원 교육 지원, 시·도 및 지방공기업 설립·투자 타당성 전문 검토 등 평가원 설립목적에 맞는 기능 수행과 지방공기업 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 필요</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li> <li>○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li> </ul>																																																															
지도감독 부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92년)한 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경영자문,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li> <li>○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li> <li>○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은 자치단체에서 이사 4~5명 (시도별 순번제 위촉)이 포함된 이사회(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지방공기업 지원이라는 출연의 목적 달성 가능</li> </ul>																																																															



### 3-2 출연 기관현황

[단위 : 백만원]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전화번호 : 02-3489-2771	홈페이지 : www.erc.re.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 3. 9. 지방자치경영협회(재단법인) 설립</li> <li>◦ 2011. 4. 1.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li> <li>◦ 2016. 6. 1. 법정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li> </ul>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3. 9월 기준)	계		정규직(무기계약)		비정규직		
	75명		69명 (무기계약 6명 / 파견공무원 5명)		6명		
임원 (*23. 9월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목영만	(전)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3. 5. 30.~'26. 5. 29.		
	상임이사	김재흠	(전)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23. 6. 5.~'26. 6. 4.		
	이사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		당연직		
	이사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사	천준호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사	박정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사	장현범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20. 6. 12.~'23. 6. 11.		
	비상임이사	여영현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20. 6. 12.~'23. 6. 11.		
	비상임이사	임미영	한길회계법인 부대표		'22. 11. 24.~'25. 11. 23.		
	비상임감사	박근서	성도이현회계법인 대표이사		'20. 6. 12.~'23. 6. 11.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진단 및 경영컨설팅 실시</li> <li>◦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설립·사업타당성 검토 등</li> <li>◦ 지방공기업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li> </ul>					
자본금 <sup>1)</sup>	30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직전연도말 기준)		11,92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22.12.31.기준	자산	20,312
	예산액 <sup>2)</sup>	17,937	18,074	18,094		부채	1,101
	지자체 지원액 <sup>3)</sup>	1,014	1,008	1,008		자본 <sup>1)</sup>	19,211
경영성과 '22.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756			14,475		281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3-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출연	54백만원(시비)

####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공기업 정책연구 및 현안과제 수행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타당성검토 등 지원
-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컨설팅 수행
-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 강화로 직급 및 전문역량 제고

#### □ 출연개요

- 평가원 운영재원 구성('23년 기준)
  - ➔ 출연 29.4%, 사업(사업수입) 70.4%, 자체(이자수입 등) 0.2%
- 전국 전체 지자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운영

#### □ 산출기초

- 출연액 : 54백만원('22년 : 54백만원, '23년 : 6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 지방공기업 수 등을 감안 시도별 배분
  - ➔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 【 '24년 타 시·도 출연 내역(안) 】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출연금	78	60	60	54	54	54	84	66	72

#### □ 기대효과

-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영평가·경영컨설팅·타당성 검토 및 정책연구 등의 전국적 시행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가능
-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의 출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책임 검토를 통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기여

###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후 피드백 컨설팅,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경영지도의 한계

### [참고] 시도 출연금 배분 기준

◎ 배분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 규모 : 1,002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 ~ 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 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1	0.5 이하 ~	24
2	0.5 ~ 0.7 이하	30
3	0.7 ~ 0.9 이하	36
4	0.9 초과 ~	42

구 간	공기업수	구간금액 (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1	1 ~ 15	24
2	16 ~ 25	30
3	26 ~ 35	36
4	36 ~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7, 공기업 수 평균 : 25.1(상하수도 포함)

### ○ 대구시 산출 : 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수		
	2023	2024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대구광역시	60	54	△6	0.6825	2	30	6	1	24

## 안건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 4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홍 성 완	김 학 남	윤 중 관	803-2502																																																											
출연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li> <li>○ 대 표 : 강 성 조</li> <li>○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li> <li>• 인 력 : 정원 88명 / 현원 71명</li> <li>• 주요사업 :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li> </ul> </li> </ul>																																																															
출연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 예정금액 : 372백만원(시비)</li> <li>○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li> </ul>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사업기간</th> <th rowspan="2">2023년 예산액</th> <th rowspan="2">2024년 요구액</th> <th colspan="5">재원별</th> </tr> <tr> <th>계</th> <th>국비</th> <th>시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368</td> <td>372</td> <td>372</td> <td></td> <td>372</td> <td></td> <td></td> </tr> <tr> <td>기관 운영비</td> <td>1년</td> <td>253</td> <td>238</td> <td>238</td> <td></td> <td>238</td> <td></td> <td></td> </tr> <tr> <td>주요 사업비</td> <td>1년</td> <td>115</td> <td>134</td> <td>134</td> <td></td> <td>134</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업</td> <td>1년</td> <td>40</td> <td>65</td> <td>65</td> <td></td> <td>65</td> <td></td> <td></td> </tr> <tr> <td>  자치단체지원</td> <td>1년</td> <td>75</td> <td>69</td> <td>69</td> <td></td> <td>69</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368	372	372		372			기관 운영비	1년	253	238	238		238			주요 사업비	1년	115	134	134		134			연구사업	1년	40	65	65		65			자치단체지원	1년	75	69	69		69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예산액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시비	시군비	기타																																																								
계		368	372	372		372																																																										
기관 운영비	1년	253	238	238		238																																																										
주요 사업비	1년	115	134	134		134																																																										
연구사업	1년	40	65	65		65																																																										
자치단체지원	1년	75	69	69		69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li> </ul>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li> <li>○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만분의 1.2</li> </ol> </li> </ul>																																																															
지도감독 부서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li> <li>○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li> <li>○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8개 자치단체가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li> </ul>																																																															



## 4-2 출연기관 현황

[단위 : 백만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 2월 설립등기 ◦ 2011. 4월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3. 9월 기준)	계		정규직		임시직·파견		
	85명		71명 (원장 1, 부원장 1, 연구위원 22, 연구원 16, 조사분석직 6, 관리직 2, 전문직 3, 사무직 20)		14명 (파견공무원 12, 청사관리원 2)		
임원 (’23. 9월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백재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 12. 22.~’23. 12. 21.		
	부이사장	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23. 2. 28.~’24. 2. 27.		
	이사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연직		
	이사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당연직		
	이사	한영희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3. 8. 30.~’24. 8. 29.		
	이사	이홍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		’23. 8. 30.~’24. 8. 29.		
	이사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3. 8. 30.~’24. 8. 29.		
	이사	허문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3. 8. 30.~’24. 8. 29.		
	이사	박일호	경상남도 밀양시장		’23. 2. 28.~’24. 2. 27.		
	이사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3. 2. 28.~’24. 2. 27.		
	이사	이남철	경상북도 고령군수		’23. 2. 28.~’24. 2. 27.		
	이사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3. 8. 30.~’25. 8. 29.		
	감사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강현도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22. 2. 28.~’24. 2. 27.		
주요기능	◦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 <sup>1)</sup>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직전연도말 기준)		12,383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22. 12. 31.기준)	자산	23,557
	예산액 <sup>2)</sup>	12,805	18,069	17,689		부채	1,402
	지자체 지원액 <sup>3)</sup>	10,422	13,797	12,383		자본 <sup>1)</sup>	22,155
경영성과 (’22.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706			12,405		2,301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출연한 금액

### 4-③ 출연 사업계획서

사업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출연	372백만원(시비)

####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예산

#### □ 출연개요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
- 연구원 운영예산('24년: 17,813백만원) 중 73.4%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당

#### □ 산출기초

- 출연액 : 372백만원
- 산정방식 : 3,096,892백만원('22년도 보통세) × 1.2\*/10,000 = 372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20.9.8.개정, '21.1.1.시행)으로 출연을 인하  
↳ ('20년까지) 1만분의 1.5 → ('21년) 1만분의 1.3 → ('22년이후) 1만분의 1.2

#### 【 5년간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예정)
출연금	340	342	320	338	368	372

#### □ 기대효과

- 지방세·재정 분야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통해 세정 운영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

####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으로 반드시 예산에 반영 필요
- 지방분권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지원사업 차질